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윤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윤영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
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
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
윤종복, 이민석, 이상욱,
이종환, 최민규, 최진혁,
허·훈, 홍국표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 전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. 2023년 제정된 상위법인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함.
- 나.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.
- 다. 주요사업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(안 제5조 제6호 및 제9호, 제10호).

라. 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.

마. 그 외 각 조항에 ‘스토킹범죄’를 ‘스토킹’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스토킹행위자”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을 예방하

고 피해자들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들의 보호·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스톡킹 예방·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피해자들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톡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스톡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들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·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들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톡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스톡킹 예방을 위한 조사, 연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3. 스톡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
4.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

5.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

6.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

7.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

8.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
9.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·지원 체계 구축사업

10.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톱킹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에 스톱킹 피해자들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방교육 등) ① 시장은 스톱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스톡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,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0조(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원,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이 피해자 또는 스톡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인 경우 스톡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6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8.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

② 시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